



미국 환경 보호국의 차별 금지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인권 사무국



배경

현재 NPRM은 인권 차별 금지에 대한 불만사항 일람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OCR(Office of Civil Rights)의 능동적인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EPA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10년 이후, EPA는 인권 프로그램을 내부 및 외부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20개 이상의 다른 연방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기준으로 삼아 EPA의 규정이 이에 부합되도록 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외부의 규제 준수 및 불만 사항 프로그램의 퇴성 측정

OCR의 2015-2020 External Compliance Strategic Plan은 다음을
통해 사명 중심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촉진합니다.

- 1)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불만사항 일람 관리 보장,
- 2) 능동적인 규제 준수 검토, 전략적인 정책 개발 및 중요한 EPA, 연
방 및 외부 제휴사, 이해 관계자(예: 수령인 및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 OCR의 외부 불만사항 프로그램 향상,
- 3) 전략적인 인적 자본 계획 수립, 조직적인 개발 및 기술 자원, 높은
성과를 올리는 조직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통해 OCR의 직
원을 강화.



NPRM의 제안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불만사항 일람 관리를 보장하고, ORC의 능동적인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 OCR에서 수행할 방법 중 하나는 차별금지 규정 수정입니다. NPRM은:

- 인권법에 부합되도록 규제 준수 검토를 시작하기 위해 EPA의 재량을 재확인함.
- 수령자에게 정기적으로 규제 준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
-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EPA의 재량 재확인,
- 불만사항의 복잡성, 범위 및 속성에 따라 접근 방식을 맞춤화시킬 수 있도록 EPA의 집행 재량 재확인.



제안된 수정 사항

- 다른 연방 기관 규정에 나와 있는 표현과 일치하도록 7.85(b), 7.110(a) 및 7.115(a) 섹션에 나와 있는 "차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이유" 표현 삭제,
- 다른 다수의 연방 기관의 규정에 나와 있는 표현과 상당히 비슷한 표현을 도입하여 수령자가 규제 준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재량 제공,
- "모든 불만사항" 수사와 관련된 7.120 섹션의 소개문을 삭제하고, 다른 연방 기관 및 28 C.F.R. Part 42, Subpart F에 있는 DOJ의 Coordination Regulations에서 널리 사용하는 규정에 합치하는 표현을 도입,
- 불만사항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불만사항 처리 단계에 대한 요구를 시행하도록 7.115(c) 및 7.120(c) 및 (d) 섹션 수정. 여기에는 접수 통지, 관할권의 검토, 수사/규제 준수 검토 완료 기한이 포함됩니다.
- 만료된 OMB 제어 횡수 인용이 삭제되며, 현재 OBM 제어 횡수가 추가됩니다.

예상되는 영향



- 배경에 따라 인권 법령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PA의 규정을 20개가 넘는 연방 기관의 규정에 맞추어 조정할 것입니다.
 - EPA가 제시된 법적 문제 및 독자적인 사실 유형에 따라 해결 경로를 맞춤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EPA는 변경 불가능한 기한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불만사항 처리 및 수사를 여전히 신속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EPA는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 규제 준수 정보 수집 시 다른 연방 기관과 비슷한 정도의 융통성과 재량을 EPA에 제공합니다. 다른 기관과 같이, 성공적인 규제 준수 보고서 프로그램은 규제 준수 검토를 위한 수령자 선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선별적 지원 및 불만사항 조사 일람 관리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수령자가 이미 수집 및 보유해야 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불만사항 검토 수행에 대한 단계별 접근 방법과 관련된 규제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령자의 보고서 내용, 빈도수 및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와 협력합니다.
- 불만사항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자 및 지역 사회와 좀 더 능동적으로 협력합니다.
- 40 CFR Part 7에 따라 EPA의 정보 요청에 적용되는 해당 OMB 제어 횟수를 명확히 합니다.



질문

- **Velveta Golightly-Howell**, 인권 사무소 소장
- **Lilian Dorka**, 인권 사무소 부소장
- **Jeryl Covington**, 외부 규제 준수 및 불만사항 프로그램 임시 부 책임자